



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

## 결 정 문

---

사건번호: KR-2000219

신 청 인: 쿠팡 주식회사(대리인 : 변호사 박기범, 변리사 장홍석)

피신청인: seosungyoun

---

### 1.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

신 청 인: 쿠팡 주식회사

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, 18층

대리인 : 변호사 박기범, 변리사 장홍석

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세양빌딩

피신청인: seosungyoun

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38번길 23 초원빌딩

나동 202호(51669)

분쟁 도메인이름은 coupang-card.com, coupang-bank.com,  
coupang-card.net, coupang-bank.net, coupangcard.net,  
coupangbank.net"이며,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(주)메가존(서울

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46 메가존빌딩 6, 7층)에 등록되어 있다.

## 2. 절차의 경과

신청인은 2020. 5. 28.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(ADNDRC) 서울사무소(이하 ‘센터’ 라고 함)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2020. 6. 4.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, 등록기관은 2020. 6. 10.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.

2020. 6. 10.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0. 6. 30.임을 통지하였다.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.

2020. 6. 30. 까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

2020. 7. 1.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, 2020. 7. 1.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0. 7. 3.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.

### 3. 사실관계

신청인 '쿠팡 주식회사'는 전자상거래 및 그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, 그의 상호 상표이자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"COUPANG"(이하 '이 사건 표장'이라 함) 및 그와 관련된 여러 표장들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(갑 제2호증).

피신청인은 일견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허여 받은 바 없음에도 2020. 4. 17. 자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적극적 사용없이 이와 연결하여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에 관한 호스팅업체가 제공하는 간단한 정보와 '사이트 구축 중' 이라는 표시만 게시하고 있다.

### 4. 당사자들의 주장

#### A. 신청인

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표장과 극히 유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마치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신청인이 이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은 자신에게 이전 또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## B. 피신청인

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.

## 5. 검토 및 판단

규정 제4조 (a)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.

- (i)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,
- (ii)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, 그리고
- (iii)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.

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.

#### A. 상표·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

신청인 회사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는 1위 업체로서 2019년 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하루 주문 건수는 평균 6~7만건에 이르며 월평균 이용자 수는 1,200만 여명에 이르는 바 이 사건 표장의 저명성이 인정된다.

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에서 확장자인 “.com”, “.net”을 제외한 부분은 신청인의 등록표장인 “coupang”에 일상적인 영어 단어인 ‘bank’ 또는 ‘card’가 결합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분리 관찰 가능하고 결합에 의해서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도 않으며, 그 요부는 신청인의 표장과 완전히 동일하여 전체적으로도 이 사건 표장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 인정된다.

#### B.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

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에게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허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, 이 사건 표장이 일상적인 표현이 아닌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

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피신청인이 이 표장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, 보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.

### C.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

위와 같이 신청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명한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이름들을 다수 등록, 보유하여 수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,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 이외에도 이 사건 표장은 물론 제3자의 저명한 표장이 포함된 다수의 도메인이름들을 등록·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(갑 제6호증 및 제7호증),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 목적이 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데에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게 한다.

## 6. 결정

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, 본 행정패널은 ‘규정’ 제4조 (a)항 및 ‘절차규칙’ 제15조에 의하여,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< coupang-card.com, coupang-bank.com, coupang-card.net, coupang-bank.net,

coupangcard.net, coupangbank.net >을 신청인에게 이전 할 것을  
결정한다.



---

1인 행정패널

정찬모

결정일: 2020년 7월 15일